

기본급 184,900원 인상! 기후위기 대응! 온실가스 감축!  
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! 성폭력 예방 및 금지!



# 지부교섭 속보

10호

2023.07.28(금)

발행처: 교육선전부 | 발행인: 박종우 | 주소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| 전화: 043-236-5077 | http://dc.kmwu.kr

[13차 지부교섭\_ 의견접근]

## 휴가 전 타결!



### 13차 교섭만에 지부교섭 타결

지부교섭이 드디어 의견접근했다. 7월 27일(목) 대한이연에서 열린 13차 지부교섭은 4시간 가까이 장시간 진행됐다. 노사 양측은 의견접근을 위해 축소교섭까지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의견접근에 이르렀다.

### 임금인상은 지회 교섭에서

지부교섭에서는 ①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 적용 ② 노동계약 저지(부분근로자 대표제 불가) ③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④ 기후위기 대응 ⑤ 노동 안전보건 의무 ⑥ 성폭력 예방 및 금지에 대해 의견접근했고, 임금인상은 지회별 교섭으로 위임했다.

### 미타결 사업장은 집중투쟁 대상

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며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. 그런 와중에 지부교섭이 휴가 전 타결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.

이제 임금인상 등 마지막 남은 과제는 지회 교섭에서 풀어야 한다. 만약 지회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8월에는 미타결 사업장에 대한 지부차원의 집중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. 사용자들은 사업장 교섭이 잘 풀리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교섭이 풀리지 않는 사업장은 지부의 집중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. 지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미타결 사업장 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이다.

# 2023년 지부교섭 의견접근안

## 1.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

-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(시급) 적용. 단 구체적 적용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정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.

## 2. 노동계약 저지

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,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, 직종, 부서의 부분근로자 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.

## 3.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

- ①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작업 중지.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. 긴급(임시)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.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는 조합이 의견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.
- ②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합의 참여 보장.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.
- ③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 의견수렴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거쳐서 제출.
- ④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 지급되도록 협의 및 지도.
- ⑤ 작업중지 해제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. 분기 1회 이상 이행점검.
- ⑥ 하청업체와 협의체 구성.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안전, 보건 점검 실시.

## 4. 2023년 임금인상 : 지회 보충교섭에서 논의 후 제출

## 5. 기후위기 대응

- ① 회사는 매년 조합에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정보 제공.
- ② 회사와 조합은 상호협약하여 조합원에게 연1회(1시간) 기후위기 관련 유급교육 실시.
- ③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며 저탄소 설비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 실행. 단, 구체적 실행내용과 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협의.
- ④ 기후위기로 인해 또는 탄소중립적 사업환경 구축 과정에서 고용, 노동시간 그밖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을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조건 조정.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노사합의로 결정.

## 6. 노동안전보건 의무

-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.
- ②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.
- ③ 회사는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④ 회사는 도급업무를 포함하여 예산, 인력,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의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,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.

## 7. 성폭력 예방 및 금지

- ① 성폭력 예방교육 연 2시간 유급 실시.
- ②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행한다.
- ③ 직장 내 성희롱(성폭력) 발생시 '일터괴롭힘 금지' 준용. 조치항목에 심리치료 추가.